

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4. 1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4월 4일, 송병길 의원 외 9인
- 나. 회부일자 : 2018년 4월 5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(2018년 4월 13일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송병길 의원

가. 제안이유

구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 (안 제3조)
- 구청장의 책무 (안 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준 및 적용범위 (안 제6조 ~ 안 제7조)
-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의 내용 (안 제8조)

-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9조)
- 협력체계 구축 및 대상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0조 ~ 안 제11조)
- 우수사례 홍보에 관한 사항 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(신준호 전문위원)

- 본 조례안은 「건축법」 및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에서 일부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마포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- 조례안의 구성은
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(안 제6조),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 및 사업(안 제7조~제8조),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9조),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 등 총12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음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
가. 안 제5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 조례」 제3조¹⁾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계획의 중복을 방지하고, 관련 사업 간의 연계와 통합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,
나. 안 제9조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각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의·자문하는 ‘서울특별시 마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’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위원회 기능을

1) 제3조(도시디자인기본계획)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도시디자인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개선·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디자인기본계획(이하 “도시디자인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

‘마포구 디자인위원회’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음.

다. 안 제10조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해 마포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검토의견은

급속한 사회변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으로써 범죄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요구²⁾가 높아지고 있음.

범죄에 대응하는 패러다임은 사후 검거 위주의 활동에서 사전예방활동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참여가 경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역주민까지 요구되고 있음.

따라서,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건축법」, 「도시개발법 시행규칙」 등을 일부 반영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, 이미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21개 의회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볼 때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향후, 기본 계획 수립시 마포구의 지역특성이 반영된 범죄예방진단 결과 및 통계, 범죄위험지도 등을 포함하여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2) 2015년 대형마트 주차장 부녀자 납치살인(김일곤 사건),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범죄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증가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